

「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0. 31(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1. 11. 9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1. 11. 9(수)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 최찬웅)
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, 자치단체 계약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법규 등의 금고 선정 관련 불합리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,
-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금고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금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“국민권익위원회” 에서 자치단체 금고선정과 관련해 불합리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정기준을 개정하려는 조례안 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 하였고
-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고 기준을 세분화하여 하였고.

○ 본 조례안은 “국민권익위원회” 의 권고안대로 금고 선정과 관련한 특혜소지를 없애 금고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